

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 신청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2. 15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2. 16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2. 27.

2. 제안이유

-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」 제5조 및 제51조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지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에 따른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.

3. 특구개요

- 명 칭: 거창화강석 산업특구
- 위 치: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-2번지 외 116필지
- 면 적: 585,926㎡(채석 409,155㎡/ 가공 176,771㎡)
- 지정기간: 2007년 ~ 2016년
 - 당 초: 2007년 ~ 2010년
 - 1차 연장: 2011년 ~ 2013년
 - 2차 연장: 2014년 ~ 2016년

※ 지정일: 2007. 10. 10.(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-53호)

○ 적용사항

- 특구법 제22조: 도로교통법(교통제한 조치 등)
- 특구법 제27조: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(임도 설치 허용)
- 특구법 제36조의8: 특허법(특허출원 시 우선 심사 허용)

○ 해제사유: 특구기간 종료 및 특구지정 목적 대부분 달성

※ 주민공청회 의견청취 결과(2017.1.19.): 반대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특구해지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2007년 특구지정 후 기간을 2회 연장하여 거창화강석 산업의 활성화 등 당초 특구지정목적이 대부분 달성되었고,
- 또한 신규산업 진출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산업단지로 전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, 최근에 개최한 주민공청회 결과 화강석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은 대체적으로 특구해지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,
- 특히 중기청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1개 지방자치 단체에 특구지정을 3개로 제한하고 있어, 우리군의 다른 특화 산업을 특구로 지정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화강석 특구지정을 해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 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 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 없음